

제 2933호

화순군공보

발행일 : 2020년 4월 21일
 발행인 : 화 순 군 수
 발행처 :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
 화순군 기획감사실

차 례

규 칙

화순군 규칙 제1371호	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~3
화순군 규칙 제1372호	화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~5

고 시

화순군 고시 제2020-62호	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6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·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회 란

제6회 화순군 조례·규칙심의회(2020.4.7.)에서 확정된 **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**을 이에 공포한다.

2020년 4월 21일
화순군수 구충곤



화순군 규칙 제1371호

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제2항 본문 중 “제3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”를 “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”로, “요금 전액을”을 “요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요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하되, 감면대상 및 감면기간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의2(요금 등의 감면) ① (생략)	제20조의2(요금 등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조례 제3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자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은 1개월분 요금 전액을 감면한다. 다만, 제4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② ---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----- ----- 요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---- ----- . <단서 삭제>
<신 설>	③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요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하되, 감면대상 및 감면기간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③ ~ ⑤ (생략)	④ ~ ⑥ (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)

제6회 화순군 조례·규칙심의회(2020.4.7.)에서 확정된 **화순군 하수도
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**을 이에 공포한다.

2020년 4월 21일
화순군수 구충곤



화순군 규칙 제1372호

화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화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천재지변. 이 경우는 재난 부서의 통보가 있는 경우로 하수도 요금 1개월분을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한다.

제32조제1항제6호 중 “인정할 때”를 “인정하여 감면하는 경우.”로 하고,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요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하되, 감면대상 및 감면기간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감면) ①조례 제25조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, 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	제32조(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천재지변(단, 재난 부서의 통보가 있는 경우 하수도 요금 1개월분을 감면한다)	1. 천재지변. 이 경우는 재난 부서의 통보가 있는 경우로 하수도 요금 1개월분을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한다.
2. ~ 5. (생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6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<후단 신설>	6. ----- 인정하여 감면하는 경우. 이 경우 요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하되, 감면대상 및 감면기간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우리군 소재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. 4. 22.

화 순 군



○ 도로명주소 :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안양산로 18 외 6건

종전 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 사유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 고
(※부여 7건)		불		임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(☎ 061-379-3454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